

각 서

금번 귀사의 수출, 수입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송회사(기사)로서
아래 나열된 도로법을 숙지하고도 컨테이너 20피트×2(콤바인) 하여 귀사의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도로법의 과적차량에 적발되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 합니다.

차량 제원	도로법 기준	별 칙	양 별 규 정	비 고
길 이	16.7m	-도로법 제 82조별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54조(운행제한) ③생략~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 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량이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 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 86조별칙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 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 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 을 합니다.	-20피트 컨테이너의 중량이 -40피트컨테이너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상식 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는 중량물 전용이며 -40피트 컨테이너 용적(부피)전용 이라는 것 을 알아야 합니다.
너 비	2.5m			
높 이	4.0m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 아 래 -

※ 총 중량 : 40톤 - 공차평균17톤(Tractor+Chassis+Contr) = (화물)중량 23톤 미만 이어야합니다.

※ 축 중량 : Tractor/1/2/3축 Chassis/4/5축 이 있으며 하나의 축이 10톤이 넘으면 과적입니다.

◎법률 제7832호

[공포일자 2005년 12월 30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 하는 사례가 미미하고 과적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년 월 일

1.컨테이너번호 :

2.컨테이너번호 :

운송회사 :

차량번호 :

면허번호 :

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인